

[일련번호 : 23]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 및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 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2장 장애인등록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산 송신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 후 공문에 장애인 정도 결정서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23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기한보다 최대 52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정도 재판정 통지 시 2022년에는 ‘재판정 기한’까지, 2023년 이후부터는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장애 정도 재판정 안내문’ 상에 ‘진단기한까지(진단기한이 지난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침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기한이 지난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은 지침 등에 근거없는 사항이고, 동일 안내문 상에 법적근거 조항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제7조 제2항이 올바른 법조항이다.

[표] 장애인 재판정 통보 및 촉구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서류제출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1			220409	220103	220407	220425	촉구 28일 지연(기한 2일 전 촉구)
2			220622	220406	-	220419	통보 15일 지연
3			220711	220406	22021	220413	서류제출자에 촉구서 오발송
4			220824	220525	미 실시	220830	촉구 누락
5			221229	221014	-	221108	통보 15일 지연
6			230309	221216	230220	230220	통보 7일 지연, 촉구 11일 지연
7			230416	230309	230321	230412	통보 52일 지연, 촉구 5일 지연
8			230420	230309	230321	230331	통보 48일 지연
9			230512	230309	-	230315	통보 25일 지연
10			230512	230309	미 실시	230417	통보 25일 지연, 촉구 누락
11			230807	230613	230712	230717	통보 37일 지연
12			230810	230613	-	230622	통보 34일 지연
13			230814	230613	-	230703	통보 30일 지연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서류제출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14			230827	230613	-	230719	통보 17일 지연
15			230930	230810	-	230814	통보 41일 지연
16			231013	230810	-	230829	통보 28일 지연
17			231026	230810	-	230907	통보 15일 지연
18			231029	230810	-	230913	통보 12일 지연
19			231119	230901	231016	231107	통보 13일 지연
20			240111	231102	-	231121	통보 22일 지연
21			240120	231102	-	231106	통보 13일 지연
22			240215	231218	-	240111	통보 33일 지연
23			241130	240920	-	241002	통보 21일 지연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